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8월 16일

제07-37호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조미진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mcho@kiep.go.kr, Tel: 3460-1152)

박현정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hjpark@kiep.go.kr, Tel: 3460-1203)

주요 내용

- ▣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음.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오고 있음.
- ▣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요구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예상 이슈를 점검해 보고자 함.
- 한·중 양국의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될 사항을 짚어본 결과, 상표 분야에서는 중국의 출원 중인 상표 미보호 문제와 유명상표 보호의 한계점, 디자인 분야에서는 중국의 부분의장·미등록의장 미보호 문제와 디자인권의 보호기간 연장 문제, 그리고 특허 분야에서는 등록요건 중 신규성 상실 요건과 관련된 문제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집행 분야에서는 중국의 정부·부처 간 조정 문제와 취약한 행정구제 및 형사구제(낮은 벌금, 높은 기소표준 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1. 머리말

- 최근 FTA 체결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협정마다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조화나 통일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식재산권 조항을 모두 포함하는 추세임.
-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와 통일의 움직임은 기존의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WTO/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를 통한 국제적인 보호 움직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의 주도하에 등장하였음.
- 기존에 WIPO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와 통일이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던 반면, WTO의 TRIPs는 실제적으로 WTO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제도가 표준화·통일화되는 최소 강제규범으로 기능하게 됨.
- 그러나 TRIPs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규정 적용의 지연 및 예외조항 해석에 따르는 유연성으로 말미암아 TRIPs를 통해 설정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자체가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선진국의 입장이었음.
-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은 FTA가 TRIPs보다 협상기간이 짧고, 합의가 쉬워 자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데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 FTA 협상에서 논의되는 지식재산권의 내용은 TRIPs 협정의 원용 정도, WIPO가 관장하는 국제협약의 활용 여부, 별도의 지식재산권 분야별 합의 내용, 집행 및 집행 관련 협력 등이 FTA 협정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조화정도를 EU 방식, NAFTA 방식, TRIPs-plus 방식 및 상호권고 방식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표 1). 상당수의 FTA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TRIPs-plus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1.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조화 유형 및 주요 특징

유형	주요 특징
EU 방식	완전한 조화추구 방식으로 해당 회원국들로 하여금 동일한 표준의 채택 요구
NAFTA 방식	TRIPs 이상의 보호기준 요구(지식재산권의 조화(harmonization)를 달성하지는 않음)
TRIPs-plus 방식	기존의 TRIPs 협정의 충실한 이행 및 TRIPs 협정에서 포괄하지 못한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보호대상을 규정 예) 한·칠레 FTA, 싱가포르·호주 FTA, 싱가포르·EFTA FTA 등
상호권고 방식 (mutual exhortation)	지식재산권 관련 공식적인 협상없이 개별 국가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절차에 대해 상호간의 권고로 낮은 차원의 통합에서 나타나는 방식임.

자료: Maskus(2000); 이근(2003), pp. 200~201.

- 현재 유럽에서는 EU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가 형성되었고, 미국의 경우 NAFTA를 필두로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 모로코 등 다수 국가와의 FTA 체결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확대하는 등,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그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보호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관심이 한·중 FTA를 비롯하여 앞으로 추진될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비록 기체결된 FTA에서 소극적, 방어적 입장을 취해 왔으나,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 등 한국기업의 진출이 많은 국가와의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이에 대한 대비로, 본고에서는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많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예상 이슈를 점검해 보고자 함.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

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 및 관련 기관

- 중국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기타 권리(영업비밀, 반도체직접회로 배치 설계권, 식물육종권)로 구분됨. 중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이 발명특허, 실용신형특허, 외관설계특허, 상표로 구분되며, 이 중 발명특허, 실용신형특허(실용신안), 외관설계특허(의장) 등 3가지는 전리(专利)로 명명됨.
 -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중앙정부는 지식재산권의 등록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함.
 -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중국의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기관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준하는 기관임. 상표권은 공상총국 산하의 상표국에서, 저작권 관리업무는 1985년에 설립된 국가판권국에서 담당하고 있음(표 2).

표 2.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권리유형		보호대상	관련법	담당 행정기관
산업 재산권	전리권	발명 제품의 형상, 구조 및 그 결합에 대해 제출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 제품의 형상, 도안, 색채 등 미적 감각을 주며 공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물건에만 해당)	전리법 (专利法)	국가지식재산권국 (國家知識產權局)
	상표권	상표, 지리표시, 서비스표, 증명상표, 단체표장	상표법	상표국 (商標局)
저작권		문학작품, 촬영작품, 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등 도형작품, 모형작품,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법	국가판권국 (國家版權局)
기타 권리	영업비밀	노하우, Client 정보	부정당경쟁방지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권	반도체직접회로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보호조례	국가지식재산권국 (國家知識產權局)
	식물육종권	식물신품종	식물신품종보호조례	국가농업부 (國家農業部)

자료: 특허청(2005),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중국편』, p. 4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중국정부 역시 국가의 주요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음.
- 중국은 상표법조약(TLT), 특허법조약(PLT), 저작권 관련 로마협약을 제외하고는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한 상황임.
- 법제도 마련에 있어서는 2001년 말 WTO 가입을 앞두고 전리법(이하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을 TRIPs 협정에 맞춰 수정하였음.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개별법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각종 행정법규, 부문규장(部門規章), 최고사법기관의 사법 해석, 지방정부의 지방법규(地方性法規) 등도 강화되는 등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비교적 정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표 3).

표 3. 중국의 지식재산권법 제정 동향(2005~2006년)

분야	중요 법령의 세부 내용
상표	「상표평가심사규칙(商標評審規則)」 시행, 상표의 평가심사 절차 간소화를 포함.
저작권	저작권 관련 행정법규, 세부규정, 사법해석이 강화되었는데, ¹⁾ 특히 「인터넷 정보 전파권 보호조례」는 WCT와 WPPT 가입에 대비한 사전준비로 인터넷 저작권상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 도입됨.
특허	「공중보건 관련 특허시행 강제허가 방법」을 제정, 중국 특허법상 제49조의 긴급상황, '비상상황' 및 '공공이익의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세관조치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조례」를 개정하여 해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강화함.
집행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 적용 법률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檢察院關於辦理侵犯知識產權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시행,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최소 피해 규모를 낮춤.

자료: KOTRA(2007), 『2006년 중국 지식재산권 백서』, pp. 7~18 참고하여 저자가 요약 정리함.

- 그동안 중국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주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강화되어 왔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자주적 혁신능력 강화 및 다국적기업의 시장독점 견제 등의 차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의 개정과 보호가 논의되고 있음.
- 중국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미국, EU와 지식재산권 관련 회의를 시작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중국 국내적으로는 FDI 유치를 통한 활발한 기술이전과 기술과급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실제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기술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전체의 자주적 혁신능력(自主創新)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1) 행정법규로 「저작권 단체 관리조례(著作權集體管理條例)」(국무원령 제429호, 2005년 3월 1일 시행)와 「인터넷 정보 전파권 보호조례(信息網絡傳播權保護條例)」(국무원령 제468호, 2006년 7월 1일 시행)가 제정, 세부 규정으로 「인터넷 저작권 행정보호 방법(互聯網著作權行政保護辦法)」(국가관권국·신식산업부 발표, 2005년 5월 30일 시행), 「컴퓨터 정품 운영시스템 사전 설치문제에 관한 통지(關於計算機預裝正版操作系統軟件有關問題)」(신식산업부·국가관권국·상무부 공동발표, 2006년 3월 30일 시행), 「저작권 침해 위법행위 단속활동의 협력 강화에 관한 잠정규정(關於在打擊侵犯著作權違法犯罪工作中加強銜接配合的暫行規定)」(공안부·국가관권국 공동발표, 2006년 3월 26일 시행)이 제정 시행됨.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적용 법률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涉及計算機網絡著作權糾紛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2006년 11월 20일 시행)과 이 사법해석에 대한 수정결정 등을 발표하였음.

다.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함.
- 특허청이 2006년도에 발간한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52개 기업 중 18.8%인 85개 기업이 중국인 또는 중국 현지 기업에 의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침해당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분석에 의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권리별로 우리 기업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디자인,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침해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4. 침해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

연도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4월	합계
응답기업 수	13	4	9	13	13	19	4	75

주: 침해당한 기업 중 “침해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기업이 75개임.
 자료: 특허청(2006),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p. 51 참고

표 5. 권리별 침해 현황

구분	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컴퓨터소프트웨어	인터넷도메인	기타	합계
응답기업 수	43 (39.1%)	29 (26.4%)	19 (17.3%)	5 (4.5%)	3 (2.7%)	3 (2.7%)	8 (7.3%)	110 (100%)

주: 침해당한 기업 중 해당 질문에 응답한 기업은 총 81개사이나, 복수응답이 있었음.
 자료: 특허청(2006),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p. 54 참고

3.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상 예상 이슈 점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상당한 수준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보호수준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중국 법제도상의 미흡한 점이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가. 상표권

■ 중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출원 및 등록 신청이 활발한 편임. 2005년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한국 상표 등록 신청건수는 3,219건(중국 내 신청 3,137건과 마드리드 신청²⁾ 82건), 등록건수는 1,302건(중국 내 등록 958건과 마드리드 등록 74건)으로, 국가별 순위에서는 각각 6위와 9위를 차지하였음.

- 상표권은 특허와 달리 기술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타의 권리에 비해 우리 기업의 침해 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바,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상표권 등록의 지연, 출원 중인 상표의 보호 및 유명상표 보호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상표권 등록의 지연

- 이의신청

○ 출원 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은 30일 이내, 중국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도 가능하여 재심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6~7년이 소요됨. 따라서 이 경우 한국기업의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 의견제출 기회의 보장

○ 한국에서는 출원결정에 대한 ‘거절’을 내리기 전 심사의견통지서를 통보하고, 기간 내에 ‘보정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중국에는 이러한 과정이 없음. 상표출원은 그 상표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중국 내 상표권 등록이 지연될 수 있음.

- 이렇듯 상표 출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모조품 생산자들은 모조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출원인은 타인의 모방행위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됨.

2) 국제상표등록은 마드리드협정과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마드리드의정서는 탄력적인 국제상표 등록제도 창설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출원인이 상표등록 희망 국가를 지정, 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등록을 원하는 국가에 자동적으로 출원됨. 한편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서 이에 기초하여 한 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을 본국 관청에 제출하면,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상표권 등록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긴 중국의 이의신청기간(현행 90일),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 ‘거절’ 결정 전 출원인의 의견제출 기회 미보장 등 관련 쟁점에 대해 한·중 양국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출원 중인 상표의 보호

- 한국에서는 출원 중인 상표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함.
- 일반적으로 상품출시와 사업개시 즈음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기 때문에 등록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그러나 상표권의 관리는 등록 이후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초기 시장형성 과정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 측에 출원 중인 상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규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유명상표 보호

- 중국에서는 유명상표(중국에서는 이를 저명상표(驰名商标)라 함)에 대해 ‘중국에서 관련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을 향유하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외에서 유명하지만 중국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가 보호되지 않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함.

나. 의장권(디자인)

- 상표 다음으로 의장권이 한국기업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분의장 보호, 미등록의장 보호 및 보호기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부분의장 보호

- 중국에서는 부분의장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예컨대 한국 차의 앞부분을 중국 업체가 고스란히 모방하더라도 뒷부분 디자인을 조금만 달리 하면 이는 의장등록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 달하고 있는바, 중국에 대해 부분의장 보호 인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미등록의장 보호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에서 특별규정을 두어 새로 개발된 디자인에 한해 3년간 등록없이 모방품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중국에서의 디자인출원은 무심사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출원에서 등록까지 8개월가량 소요되고 있음. 따라서 디자인 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등록되기 전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우리나라와 같은 사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호기간

- 우리나라의 디자인 보호기간은 등록 후 15년이나, 중국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10년임. 갱신이 가능한 상표권과 달리, 디자인은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보호되므로 양국의 보호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중국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함.

다. 특허

- 중국의 특허제도는 2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원칙 및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임. 따라서 논란의 대상이 될 만한 이슈는 매우 한정적이며, 특허 등록요건이 이슈가 될 수 있음.

■ 등록요건: 신규성 상실 요건

- 특허의 등록요건인 '신규성'에 있어, 우리나라 현행 특허법상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특허출원 전에 국내 혹은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신규성 상실 사유로 들고 있음. 그러나 중국에서는 '공연실시'에 있어 여전히 국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중국에 '공연실시'에 대한 국제주의 채택을 적극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라. 집행(Enforcement)

- 중국이 지식재산권 최대 침해국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조적 문제점과 행정·형사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조적 문제점

- 중국의 TRIPs 협정 이행에 관한 보고서 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집행 면에 있어 TRIPs 협정의 의무이행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부처 간 조정 문제, 법원과 행정조직의 전문인력 부족, 집행과정 및 결과의 불투명성, 지역보호주의 및 부정·부패 등이 지적(2007년도 USTR의 NTE 보고서)되고 있음. 특히 일본은 TRIPs 이사회에 제출된 의사록에서 중국이 가지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역시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입장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함.

■ 중국의 행정·형사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 2003년도 중국의 WTO 이행보고서에서 USTR은 중국정부의 정기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이 효과적이지 못한 원인으로 매우 낮은 벌금 수준, 그리고 형사처벌의 기소표준이 높아 통상 실제로 형사처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지적함.
- 한편 2007년 미국의 NTE 보고서에서는 형사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원인으로, 저작권 사용에 대한 상업적 의도가 있음을 형사처벌의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the profit motive requirement in copyright cases), 범죄 행위가 있음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조사 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추가하였음.
-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중국 내 모조품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 실제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국의 행정 및 형사 집행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4.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앞으로 논의될 중국과의 FTA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상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중국의 이의신청기간(현행 90일),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 점, ‘거절’ 결정 전에 출원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 등 중국 내

상표권 등록 지연과 관련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중국의 출원 중인 상표 미보호 문제와 유명상표 보호의 한계점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것임.

- 의장(디자인) 분야에서는 중국의 부분의장·미등록의장 미보호 문제와 상대적으로 짧은 중국의 디자인 보호기간(현행 출원일로부터 10년) 연장 문제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허 분야에서는 등록요건 중 신규성 상실 요건에 있어 중국 측이 ‘공연실시’ 규정에 대해 여전히 국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집행 분야에서는 중국의 정부·부처 간 조정 문제, 법원과 행정조직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 집행과정 및 결과의 불투명성, 지역보호주의 및 부정·부패와 더불어 취약한 중국의 행정구제 및 형사구제(낮은 벌금, 높은 기소표준 등) 등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것임.
- 우리 기업의 공신력 확보와 우리 제품에 대한 평판 유지 및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한·중 FTA 협상시 이상에서 살펴본 쟁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